

제33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7월1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민수·오제세·원혜영·김영록·박기춘·홍지만·우윤근·심재권·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정희수 · 손인춘 · 이완영 · 이명수 · 김태원 · 박윤옥 · 이만우 · 황영철 · 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이상직 · 박남춘 · 오영식 · 송호창 · 이개호 · 정청래 · 임수경 · 김광진 · 문희상 · 정호준 의원 발의)(계속)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박덕흠 · 홍의락 · 민홍철 · 한명숙 · 이미경 · 박지원 · 최규성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김태원 · 문정립 · 박성호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한성 · 이주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4)(계속)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이상민 · 박홍근 · 박완주 · 김영환 · 최동익 · 우윤근 · 설훈 · 홍종학 · 최재성 · 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 · 나경원 · 심학봉 · 홍지만 · 이노근 · 박명재 · 이우현 · 정두언 · 서청원 · 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정세균 · 정성호 · 김제남 · 황주홍 · 정진후 · 장병완 · 김동철 · 김영록 · 신기남 · 강기정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백재현 · 문희상 · 박남춘 · 진선미 · 김민기 · 최원식 · 조경태 · 이종걸 · 황주홍 · 이원욱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부좌현 · 서영교 · 안민석 · 최동익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유승우 · 박성효 · 이한성 · 김성찬 · 김기선 · 문정립 · 박성호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8)(계속) 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홍문표 · 이종배 · 김태원 · 이한성 · 이자스민 · 박민수 · 황주홍 · 조원진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4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김춘진 · 신경민 · 박수현 · 김영록 · 박영선 · 박병석 · 윤후덕 · 김현 · 최원식 의원 발의)(계속) 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배기운 · 백재현 · 박주선 · 정진후 · 이자스민 · 김상희 · 김태년 · 정성호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부좌현 · 윤후덕 · 배재정 · 박원석 · 장하나 · 유인태 · 노영민 · 심상정 · 이상직 · 박홍근 · 김성곤 · 신경민 · 송호창 · 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4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관석 · 안민석 · 이개호 · 김성곤 · 김현 · 민홍철 · 홍영표 · 배재정 · 백재현 · 서영교 · 인재근 · 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4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한명숙 · 장병완 · 김현 · 안민석 · 양승조 · 진성준 · 박지원 · 이윤석 · 홍영표 · 이연주 · 임내현 의원 발의)(계속) 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주영 · 민현주 · 박인숙 · 송영근 · 정갑윤 · 서용교 · 민병주 · 이운룡 · 이이재 의원 발의)(계속) 4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계속) 4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헌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계속) 4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양승조 · 유승희 · 김윤덕 · 김광진 · 박수현 · 김태년 · 신기남 · 이미경 · 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4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 · 나경원 · 심학봉 · 홍지만 · 이노근 · 박명재 · 이우현 · 정두언 · 서청원 · 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4
 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김관영 · 김현 · 노웅래 · 박남춘 · 박혜자 · 배기운 · 배재정 · 설훈 · 오제세 · 유성엽 · 이목희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4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 · 정세균 · 신경민 · 김광진 · 진성준 · 한명숙 · 김춘진 · 이춘석 · 이석현 · 조정식 · 양승조 · 김윤덕 · 이상민 · 우윤근 · 배재정 · 유대운 의원 발의)(계속) 4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기운 · 박홍근 · 김성주 · 이만우 · 우윤근 · 정진후 · 박수현 · 김성곤 · 추미애 · 유성엽 · 정호준 · 전순옥 · 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4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김관영 · 이미경 · 한명숙 · 배재정 · 이개호 · 유성엽 · 임수경 · 윤호중 · 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4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7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그동안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고받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입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박민수 · 오제세 · 원혜영 · 김영록 · 박기춘 · 홍지만 · 우윤근 · 심재권 · 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정희수 · 손인춘 · 이완영 · 이명수 · 김태원 · 박윤옥 · 이만우 · 황영철 · 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이상직 · 박남춘 · 오영식 · 송호창 · 이개호 · 정청래 · 임수경 · 김광진 · 문희상 · 정호준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박덕흠 · 홍의락 · 민홍철 · 한명숙 · 이미경 · 박지원 · 최규성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김태원 · 문정림 · 박성호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한성 · 이주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4)(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상민 · 박홍근 · 박완주 · 김영환 · 최동익 · 우윤근 · 설훈 · 홍종학 · 최재성 · 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 · 나경원 · 심학봉 · 홍지만 · 이노근 · 박명재 · 이우현 · 정두언 · 서청원 · 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정세균 · 정성호 · 김제남 · 황주홍 · 정진후 · 장병완 · 김동철 · 김영록 · 신기남 · 강기정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백재현 · 문희상 · 박남춘 · 진선미 · 김민기 · 최원식 · 조정태 · 이종걸 · 황주홍 · 이원욱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부좌현 · 서영교 · 안민석 · 최동익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유승우 · 박성호 · 이한성 · 김성찬 · 김기선 · 문정림 · 박성호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8)(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홍문표·이종배·김태원·이한성·이자스민·박민수·황주홍·조원진·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춘진·신경민·박수현·김영록·박영선·박병석·윤후덕·김현·최원식 의원 발의)(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백재현·박주선·정진후·이자스민·김상희·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부좌현·윤후덕·배재정·박원석·장하나·유인태·노영민·심상정·이상직·박홍근·김성곤·신경민·송호창·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관석·안민석·이개호·김성곤·김현·민홍철·홍영표·배재정·백재현·서영교·인재근·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언주·임내현 의원 발의)(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민병두·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성곤·배기운·전병현·문병호·민홍철·이미경·백재현·인재근·김윤덕·유기홍·조정식·강동원·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유승희·김윤덕·김광진·박수현·김태년·신기남·이미경·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관영·김현·노용래·박남춘·박혜자·배기운·배재정·설훈·오제세·유성엽·이목희·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정세균·신경민·김광진·진성준·한명숙·김춘진·이춘석·이석현·조정식·양승조·김윤덕·이상민·우윤근·배재정·유대운 의원 발의)(계속)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기운·박홍근·김성주·이만우·우윤근·정진후·박수현·김성곤·추미애·유성엽·정호준·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김관영·이미경·한명숙·배재정·이개호·유성엽·임수경·윤호중·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문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문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정문헌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박범계 의원, 강기운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2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축소하기로 하고,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되,

셋째,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되 법 시행 이후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대로 내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재외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첫째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둘째 수형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되, 다만 자격정지형이 병과된 수형자는 선고형에 관계없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군인 등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하여 접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상투표신고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둘째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정문헌 소위원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태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장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유승희 의원, 백군기 의원, 이원욱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의 입당 및 탈당 시 본인확인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탈당 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의 당헌·당규

로 정하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는 방법을 추가·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원증의 의무발급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의 발급 여부와 관련 없이 당원명부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이 많으며 당원증의 활용 용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해 주신 우리 정문헌, 김태년 두 분의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한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측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워낙 정확하고 완벽하게 심사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토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법안 주요내용에 있는 조문으로 봐서는 35조라고 되어 있는데 35조에는 그것이 없어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김기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그러니까 4월, 10월로 되어 있는 것을 4월 한 번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국선거로 되어 있는……

○위원장 이병석 김기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께서 보증하시면 그냥 가서도 됩니다.

○김상희 위원 문제없지요?

표현이 달라서 그래, 표현이.

○위원장 이병석 설명을 더 해 드리세요.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김기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됐습니까, 김기식 위원님?

○김기식 위원 그런데 법체계상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나?

○위원장 이병석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께 자구체계 정리에 대한 위임 의결이 있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 아니, 이것이 체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보궐선거 규정을 앞에다 두고 그것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뒤에다 빼 가지고……

선거가 없는 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체계는 앞에 보궐선거 규정상 4월 달에 한다, 한 번으로 한다 하고 동시선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례로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현행법 규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 체계가 그런데 현행법은 그것 없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원래 그냥 4월, 10월을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전국선거와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국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반 이상이 안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부 특례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어서 하여간에 저는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법……

○정문헌 위원 법체계에 대한 문제지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기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법의 변화된 내용이 근본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례조항으로 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에다가 보궐선거에 대해서 ‘단’하고 단서조항으로 어떻게어떻게 한다라고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병석 그 부분의 자구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이 되는 대로 양 간사님과 협의해

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협의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병석** 아마 기존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 법체계는 4월, 10월을 매년 매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은 지방선거 있는 해, 총선 있는 해, 대선 있는 해에 다 예외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냥 4월 달에 정상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이……

○**김태년 위원** 많아요.

○**김기식 위원** 아니, 반밖에 안 된다고요, 지난 번에 보니까. 그러면 체계상 안 맞아요.

○**위원장 이병석** 하여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2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안건이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8일 화요일 날 개회해서 선거구획정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경대수	김기식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민현주	박민식
백재현	신정훈	여상규	이병석
정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
-------------------	-----